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6. 1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5. 2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5. 28.

다. 상정일자: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6. 1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주차관리과장 나혜진】

가. 제안이유

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 확대, 국가 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등을 반영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훈 예우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여성우선주차장 명칭 변경 및 이용 대상 확대(안 제21조의4)
-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조문 신설(안 제21조의5)
-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조문 정비(안 제4조의5)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개정 내용 반영 및 조문 정비(안 제4조의4)
-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중 토지가액 산정 시 인용 법 조항 정비(안 제21조의3)

다. 참고사항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입법예고 : 2024. 4. 18. ~ 5. 8.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 확대, 국가 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등을 반영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훈 예우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제4조의4(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

- 제목 변경: "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"에서 "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"으로 변경.
- 주차면수 기준 변경: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당 3퍼센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당 5퍼센트로 변경.
- 제2항 삭제.
- 제3항의 용어 변경: "전기자동차 주차구획"을 "환경친화적 자동차 전

용주차구획"으로 변경.

제4조의5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

- 제4항 및 제5항 신설.
- 제4항: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요 출입구, 승강기, 계단,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함.
- 제5항: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.

제21조의3(가액 산정 기준)

- "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"를 "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"로 변경.

제21조의4(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

- 제목 변경: "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"에서 "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"으로 변경.
- 이용대상 신설: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, 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그 동반자.
- 설치 위치 기준 추가: 승강기, 계단에 가까운 위치, cctv 감시 위치, 장애인 주차구획 인접 위치.
-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기준 추가.

제21조의5(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)

- 신설: 공영주차장 및 구청 청사 주차장의 주차대수 1.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.
- 이용 대상 및 위치 기준,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표시 기준,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요구, 부적절한 주차 시 이동 권고 등 규정.

부칙

- 시행일: 공포한 날부터 시행.

- 경과조치: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,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간주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, 장애인, 가족,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,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.
- 다만, 친환경 자동차 용어 정의의 명확화, 새로운 주차구획 규정의 추가로 인한 행정적 관리 및 감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가족배려주차장의 대상 및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었으나,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주차장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이 추가되었으나, 실제 설치 및 유지보수시의 관리·감독 문제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